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160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2. 3. 10.
4. 회부일자 : 2022. 3. 16.

II. 제안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함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2조
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참조)

3. 협의 : 해당기관 없음

4.. 기타

o 신·구조문 대비표 : (별첨 1)

o 입법예고(2022. 1.27. ~ 2.16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(별첨 3)

o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o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(별첨 4)

o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 (별첨 5)

o 학생인권영향평가 : 원안 동의 (별첨 6)

o 관계법규 : (별첨 7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60호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지난 2020년 12월 22일, 상위법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정보공개법’)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이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기존의 외부위원 정수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(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1).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의 동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1)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~② (생략)

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<시행 2021.12.22.>

④~⑥ (생략)

[표-1]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

연 번	직 위 / 직 업	성 명	임 기	비고
1	기획조정실장	최OO	재임기간	내부
2	교육정책국장	고OO	재임기간	내부
3	변호사	권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4	교수	이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5	교수	장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6	변호사	최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7	변호사	한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계 법령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공개법)

[시행 2021. 12. 23.] [법률 제17690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, 지리적 여건,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(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·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